CONTENTS

지침개요

제1편 특성화·다기능화 시범운영 기본계획 • 01

Ⅰ.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 • 03

1. 추진배경 ····· 03
2. 추진경과 ····· 03
3. 현황 및 문제점 ····· 04
4. 추진과제 ····· 07
5. 기대효과 ····· 11

Ⅱ. 시범운영 개요 • 13

1. 시범운영 배경 및 필요성 ····· 13
2. 시범운영 목적 ····· 13
3. 시범운영 기간 ····· 14
4. 시범운영 지역 ····· 14
5. 시범운영 내용 ····· 14
6. 시범운영 소요예산 ····· 15
7. 시범운영 추진체계 ····· 16
8. 시범운영 추진일정 ····· 19

제2편 특성화 · 다기능화 시범운영 실시 • 21

Ⅰ. 특성화 · 다기능화 사업유형 • 23

1. 유형개발 개요 ····· 23
2. 유형별 사업내용 ····· 25

Ⅱ. 시범운영 추진절차 및 내용 • 48

1. 기본방향 및 추진절차 ····· 48
2. 프로세스별 업무 내용 ····· 49
3. 세부 처리절차 ····· 50

Ⅲ. 행정사항 • 64

1. 특성화·다기능화 사업 추진 관련 시·군·구청 행정체계 ···· 64
2. 예산의 배정 및 집행 ····· 66

부 록 • 71

[서식1] 사업지역 신청서(시·군·구 작성용) / 73
[서식2] 사업신청서(사업신청기관 작성용) / 77
[서식3] 사업지역 선정관련 의견서(시·도 작성용) / 84
[서식4] 사업신청기관 심의관련 의견서(지사협 작성용) / 85
[서식5] 사업비 집행계획서(사업수행시설 작성용) / 86
[서식6]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 신청서(사업수행시설 작성용) / 87
[서식7] 사업비 지원 신청서(사업수행시설 작성용) / 89

지침 개요

지침의 목적

-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하고 그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회복지시설 특성화·다기능화* 시범운영의 기본 취지와 목표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특성화 : 지역 내에 동일 시설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특화하여 서비스 중복 방지 및 만족도 제고

※ 다기능화 : 지역 내에 시설 부재로 서비스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 시설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원래 제공하지 않는 기능이라도 추가함으로써 서비스 제공 기회 확대

- 사업추진단 구성·운영, 주요 사업내용 및 절차 등 시범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시범운영 담당자가 관련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여 원활하게 시범운영을 추진하도록 함
- 시범운영 과정에서 본 지침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 향후 특성화·다기능화 확대 실시 시 사업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지침의 적용

- 동 지침의 적용 대상과 기간은 다음과 같음
  - 적용 대상 : 특성화·다기능화 사업지역으로 지정된 8개 시·군·구
    ※ 사업 수행시설, 사업추진단,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도 활용 가능
  - 적용 기간 : 특성화·다기능화 사업지역 지정일부터 시범운영 종료일까지
- 동 지침은 시범운영을 위한 안내서인 점을 감안, 사업효과를 최대한 제고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에 따라 능동적으로 실시함

- 지침의 내용 중 전체 사업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거나, 일부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는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시행 가능

  ※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와 반드시 협의

- 동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추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의 추진 상황을 반영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갈 것임

지침의 구성

- 동 지침은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침 마련을 위해 개최한 간담회, 자문회의, 공청회 자료 및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지역맞춤형 기능조정 방안』 연구용역 등을 취합하여 정리한 것임

- 동 지침은 <특성화·다기능화 시범운영 기본계획>과 <특성화·다기능화 시범운영 실시> 총 2편으로 구성됨

  - 제1편 '특성화·다기능화 시범운영 기본계획'에서는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과, 시범운영의 개요 등 시범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개괄적으로 설명함

  - 제2편 '특성화·다기능화 시범운영 실시'에서는 특성화·다기능화 사업유형 및 추진절차 등 시범운영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설명함

제1편

특성화 · 다기능화 시범운영 기본계획

Ⅰ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

1 • 추진배경

■ 현재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주체인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중복 및 지역간 시설설치 불균형으로 사각지대 발생, 서비스대상자 혼란 및 정부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이 드러남

○ 시설유형간 기능조정 및 지역내 시설간 기능조정(특성화・다기능화)을 통해 꼭 필요한 서비스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 추진경과

■ 시설유형간 기능조정

○ 복지부 「민간전달체계 개선 추진단」 구성・운영('09.1월~3월)

○ 관련 시설 협회 및 지자체 등 설명・의견수렴('09.3월~4월)

○ 총리실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추진단」 구성・운영('09.4.22)

○ 「비상경제대책회의」 보고('09.6.11)

○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 브리핑('09.6.12)

지역내 시설간 기능조정(특성화·다기능화)

-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지역맞춤형 기능조정 방안」 연구용역 ('09.4월~10월)
- 특성화·다기능화 기능조정방안 및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시설협회 및 지자체 의견수렴('09.7월~10월)
- 다기능화 근거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09.8.21~9.10)
-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지역맞춤형 기능조정 방안」 공청회 개최 ('09.10.19)

3 • 현황 및 문제점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 현황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써 사회복지법인, 개인에게의 위탁 또는 국가·지자체 직영 등의 형태로 운영
- (유형별)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지침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보건·복지·고용의 사회복지시설은 103개 유형 총 15,989개소

※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유형만 분석(여성부 소관 15개 유형 제외)

대상별 사회복지시설 분포 현황

('09.4월 기준)

대 상	종 합	가 족	아 동	청소년	노 인	장애인	노숙인	자활 대상자	정신 질환자	총 계
유형수	1	16	21	11	16	22	4	2	10	103
시설수	410	680	3,768	1,285	6,781	2,171	149	270	475	15,989

* 경로당 57,930개소, 보육시설 33,499개소 제외

○ (지역별) 대도시(48.3%), 중소도시(33.7%), 농어촌(17.9%) 순으로 사회복지시설 분포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분포 현황

(출처 : '08.12월,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연구)

대 상	총 계	종 합	가 족	아 동	청소년	노 인	장애인	노숙인	자활 대상자	정신 질환자
대도시	6,257(48%)	275	436	1,626	551	1,936	1,004	109	100	228
(○○구)	131	10	12	14	10	36	37	1	3	8
중소도시	4,360(34%)	106	235	1,149	526	1,442	659	27	69	147
(□□시)	66	1	3	23	4	18	13	-	1	3
농어촌	2,326(18%)	27	88	523	348	940	233	14	73	80
(△△군)	32	0	1	8	3	13	4	-	1	2

※ 대도시인 ○○구 시설 수(131개소)는 농어촌인 △△군의 시설 수(32개소) 4배
(○○구가 △△군에 비해 인구는 10.8배, 지역넓이는 12.6%)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 문제점

○ 사회복지시설의 중복 및 부실시설 존재

– 유사대상과 유사기능을 가진 사회복지시설이 중복적으로 운영

• 사회복지시설이 사업별·부처별로 개별 법률에 의해 각각 규정되어 유사 대상에게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들이 중복적으로 존재

– 시설로 존재할 필요가 없는 서비스가 시설형태로 존재

• 단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프로그램 형식이 아닌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 규정

–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시설이 사회복지시설로 규정

○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서비스 제공 불균형

– 일부지역은 유사시설 및 유사서비스가 중복되고 일부지역은 시설이 없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지역간 불균형 발생

•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 후 중앙의 조정기능 미흡, 지자체장 의지 및 지자체 재정여건의 차이 등으로 지역간 편차 발생

( )

- ○○ , (8)· (1)· (1)

( ) ,

- □□ ,

4 • 추진과제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방향

시설유형간 기능조정

○ 추진방안

–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시설형태로 존재할 필요가 없는 사회복지 시설 유형을 서비스 대상 및 내용에 따라 3가지 방안으로 조정

• 3가지 방안 적용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103개 유형을 55개로 조정

방 안	모 델	조정 후 모습(After)
병합 모델 (29개→1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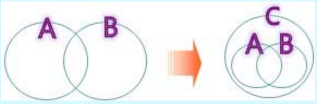	A와 B의 기능· 조직이 C에서 모두 병렬구조로 존재
흡수 모델 (11개→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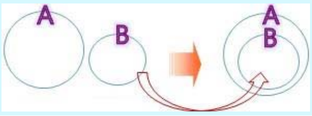	B의 기능·조직이 A의 일부로 흡수
정리 모델 (24개→0개)		법에서 삭제하거나, 사회복지시설유형에서 제외

※ A, B, C : 해당 시설유형

○ 대상시설

– (병합모델) 29개의 시설이 11개로 병합되어 시설이용의 편리성 제고

분야	대상시설유형	시설유형(안)
가족	건강가정지원센터	병렬표기 (별도명칭결정시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모자보호시설	모자가족 복지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공동생활가정	
	부자보호시설	부자가족 복지시설
	부자자립시설	
	부자공동생활가정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미혼모공동생활가정	
노숙인	노숙인상담보호센터	· 홈리스상담센터 · 홈리스복지시설
	노숙인쉼터	
	부랑인복지시설	

분야	대상시설유형	시설유형(안)
장애인	지체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시각장애인생활시설	
	청각언어장애인생활시설	
	지적장애인생활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사업장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 생활시설 · 직업재활시설 · 종합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	

※ 법령 개정 등을 통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예정

- (흡수모델) 11개 시설의 기능 및 조직을 5개의 시설로 흡수해 서비스 품질 제고

분 야	흡수대상시설	흡수시설
종 합	재가복지봉사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아 동 청소년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양육시설
	자립지원시설	
	청소년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자활	청소년자활지원관	지역자활센터
정 신 질환자	아동청소년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센터

※ 법령 개정 등을 통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예정

- (정리모델) 24개의 시설을 정리하여 복지정책의 효율성 제고

분야	대상시설유형	구체적 내용	분야	대상시설유형	구체적 내용
아동·청소년	아동단기보호시설	법적근거 삭제	가족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법적근거 삭제
	아동전용시설			여성복지관	
	아동복지관			가족상담센터	사회복지시설유형에서 제외
	가정위탁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유형에서 제외 *사업수행 기관으로 존속	장애인	장애인체육시설	법적근거 삭제
	청소년수련원			장애인수련시설	
	청소년특화시설			점자도서관	법적근거 삭제
	청소년야영장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유스호스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복지시설유형에서 제외 *사업수행 기관으로 존속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노인	노인전문병원	법적근거 삭제
	청소년지원센터			노인휴양소	

※ 법령 개정 등을 통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예정

○ 적용사례

– (병합모델) 모자보호시설·모자자립시설·모자공동생활가정 → 모자가족복지시설

. .
,

– (흡수모델) 재가복지봉사센터 → 종합사회복지관

,

– (정리모델) 노인전문병원

2
,

지역내 시설간 기능조정(특성화·다기능화)

○ 추진방안

– (도시형 : 특성화)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 특정지역에 다수 존재하여 서비스 공급이 중복되는 도시형 지역의 경우에는 특성화*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 제고

– (농어촌형 : 다기능화) 시설이 부족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다기능화*를 통해 유휴공간 및 인력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제공

○ 적용사례

– (특성화) 종합사회복지관의 특성화

, (· ·)
(· ·)

– (다기능화) 장애인생활시설의 다기능화

,
· ,

5 • 기대효과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만족도 제고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이용의 편리성 확보

– 유사시설에서 필요 서비스를 추가 제공해 서비스대상자로 하여금 적시에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서비스 이용 가능

- 시설 인프라가 부족했던 농어촌 지역은 기존시설의 서비스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 다양한 서비스의 복합적 제공 및 전문성 확보로 서비스대상자의 복지 체감만족도 증가

- 여러 시설을 방문할 필요없이 한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원스톱으로 제공
- 유사 서비스 제공의 시너지 효과 및 행정이 아닌 사업에의 투자 집중으로 서비스 품질 제고

한정된 정부자원의 효율적 활용

○ 사업비 지원만으로 시설 설치와 같은 효과 달성 가능

- 시설유형간 기능조정을 통해 해당 시설의 개소수 증가 효과
- 별도의 시설 설치 없이 기존 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으로 해당 서비스 제공 가능

○ 꼭 필요한 서비스에 정부 예산 집중 투자

- 시설의 인프라 구축이나 행정 인력에 정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인력과 품질제고에 예산 집중
- 동일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규모의 경제를 통해 서비스 확대 가능

☞ 본 지침은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추진과제 중 지역내 시설간 기능조정(특성화·다기능화) 시범운영을 위한 안내서로써 해당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임

Ⅱ 시범운영 개요

1 • 시범운영 배경 및 필요성

■ 지역간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성화·다기능화* 시범운영 추진

· · ,

,

· · ,

2 • 시범운영 목적

■ 특성화·다기능화를 시범운영하여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효과를 검증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하여 보완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전국 확대 실시의 기반 마련

○ 지역별로 다양한 모형의 특성화·다기능화를 시범운영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특성화·다기능화 실시를 위한 지침 마련

3 • 시범운영 기간

- 2010년 3월 ~ 2010년 12월(1년간)

4 • 시범운영 지역 : 8개 시·군·구

- 특성화·다기능화 유형별로 지방자치단체장 및 사회복지시설의 적극적 참여의지가 있는 지역 중 도시형·농어촌형 등을 균형있게 선정
  - ○ 특성화(2) 및 다기능화(6) 총 8개 시·군·구

5 • 시범운영 내용

- 각 7개 유형에 적합한 지역으로 선정된 8개 시·군·구에 대해 사업수행시설의 특성화·다기능화 시뮬레이션
- 특성화·다기능화 사업 추진을 위해 각 지역별 적합한 운영 개선 사항, 프로그램, 네트워크 모형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
- 특성화·다기능화 실시를 위한 관련 법령 및 행·재정적 제도 개선 과제 및 방안 도출, 전국적 확대 대비 특성화·다기능화 지침 마련

특성화·다기능화 유형

구 분		유 형	사업지역수
특성화	유형1	○ 사회복지관의 대상별 특성화	1개 시·군·구
	유형2	○ 사회복지관의 사업별 특성화	1개 시·군·구
다기능화	유형3	○ 장애인복지관의 다기능화	1개 시·군·구
	유형4	○ 노인복지관의 다기능화	1개 시·군·구
	유형5	○ 장애인생활시설의 다기능화	1개 시·군·구
	유형6	○ 노인생활시설의 다기능화	1개 시·군·구
	유형7	○ (지역사회 중심) 주민맞춤형 다기능화	2개 시·군·구

※ 특성화·다기능화 유형은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음. 따라서 본 시범운영에서의 특성화·다기능화 유형은 범위의 제한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성화·다기능화를 추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유형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시범운영을 실시하고자함

6 • 시범운영 소요예산(민간경상보조)

- 8개 시·군·구 시범운영비 : 745백만원
  - ○ 사회복지시설 특성화·다기능화 사업 추진 지원 : 600백만원
  - ○ 유형별 시범운영 컨설팅 및 매뉴얼 개발·보급 : 145백만원

7 • 시범운영 추진체계

개요

추 진 주 체	기 능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사업추진단심사위원회'	○ 시범운영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총괄·조정 ○ 시범운영 추진상황 점검, 평가 ○ 사업추진단 구성·운영 ○ 사업추진단 선정
시·도	○ 관할 지역 내 시범운영 지원 ○ 사업지역 추천
시·군·구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특성화·다기능화 사업계획서 수립 및 공모 참여 ○ 특성화·다기능화 시범운영 관리 ○ 사업수행시설 선정 ○ 특성화·다기능화 사업신청기관
사업추진단	○ 사업지역 선정(공모) ○ 유형별 시범운영 모니터링, 컨설팅 지원 ○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 및 결과보고 ○ 특성화·다기능화 매뉴얼 마련
사업수행시설	○ 사업실행계획서 수립 ○ 특성화·다기능화 시범운영 실시 ○ 특성화·다기능화 시범운영 추진경과 중간보고 및 최종결과 보고

각 기관별 역할

- 보건복지가족부 : 시범운영 총괄
  - 시범운영 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 및 시달
  - 국고보조금 확보 및 지원
  - 시범운영 홍보 및 설명회 개최
  - 사업지역 최종 선정
  - 사업추진단 구성·운영
  - 시범운영 추진현황 지도점검 및 평가
  - 특성화·다기능화 확대 추진을 위한 법률·제도개선 등
- 시·도 : 시범운영 지원
  - 사업지역 선정 협조
  - 기타, 시범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 등
- 시·군·구 : 시범운영 관리
  - 시범운영 관리 및 지원
  - 지역주민에 대한 시범운영 홍보
  - 사업수행시설 선정

※ 사업수행시설에 대한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결과를 토대로 선정하도록 권고

- 사업추진단 : 시범운영 컨설팅
  - 시범운영 추진현황 모니터링, 컨설팅 지원
  - 시범운영 평가방안 수립 및 평가 실시

- 시범운영 정기회의 개최
- 특성화·다기능화 확대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및 매뉴얼 마련
- 시범운영 우수사례 보고대회 개최 및 최종 결과보고 등

○ 사업수행시설 : 시범운영 실시

- 시범운영 실시 및 시범운영에 따른 중간·결과보고

사업추진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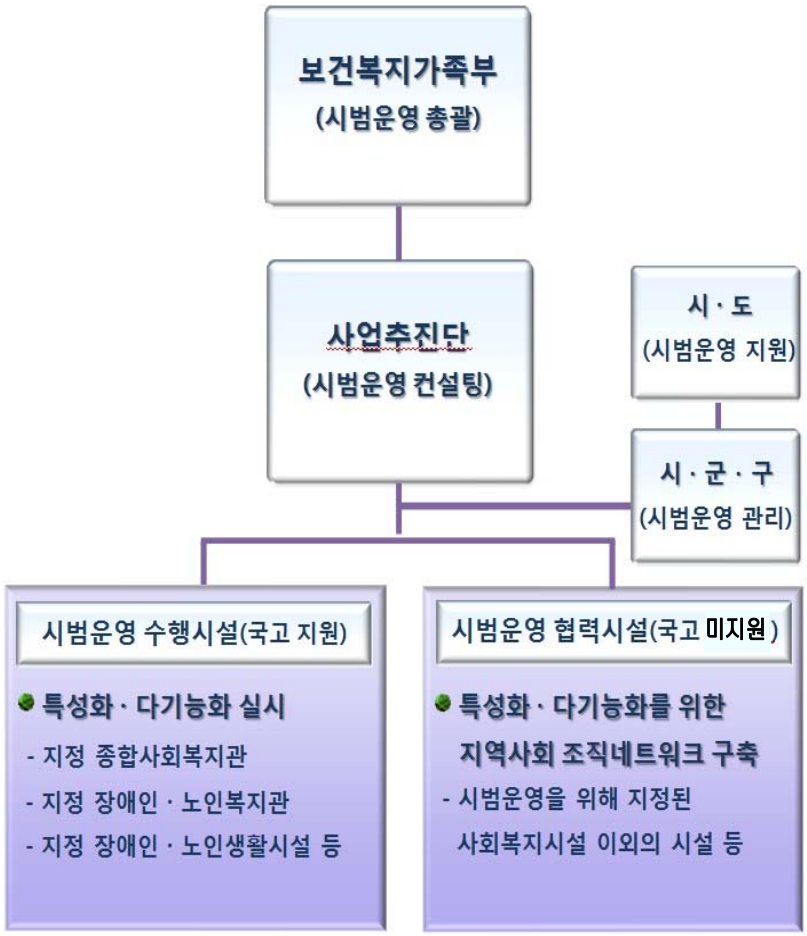

8 • 시범운영 추진일정

추 진 사 항	일 정	추진주체
○ 시범운영기본계획 수립	'10. 1	보건복지가족부
○ 사업지역 공모 및 선정		사업추진단
- 사업계획서 작성	'10. 2	시·군·구
- 사업수행시설 공모	'10. 2	시·군·구
- 사업수행시설 사업신청서 심의	'10. 2	지사협 등 심의위원회
- 사업수행시설 선정 및 통보	'10. 2	시·군·구
- 시·군·구 사업계획서 제출	'10. 2	시·군·구
- '사업지역선정위원회' 구성	'10. 2	사업추진단
- 사업지역 선정 및 통보	'10. 2	사업추진단
○ 시범운영 실시	'10. 3~'10.11	사업추진단/사업수행시설
○ 시범운영 모니터링, 자문 등 컨설팅	'10. 3~'10.11	사업추진단
○ 시범운영 중간평가	'10. 5	사업추진단
○ 시범운영 최종평가	'10.11	사업추진단
○ 시범운영 결과보고 및 발표회	'10.11	보건복지가족부/사업추진단
○ 시범운영 사후관리		
- 특성화·다기능화 매뉴얼 마련	'10.12	보건복지가족부/사업추진단

※ 특성화·다기능화 시범운영에 따른 세부 추진절차 및 추진내용은 제2편 제2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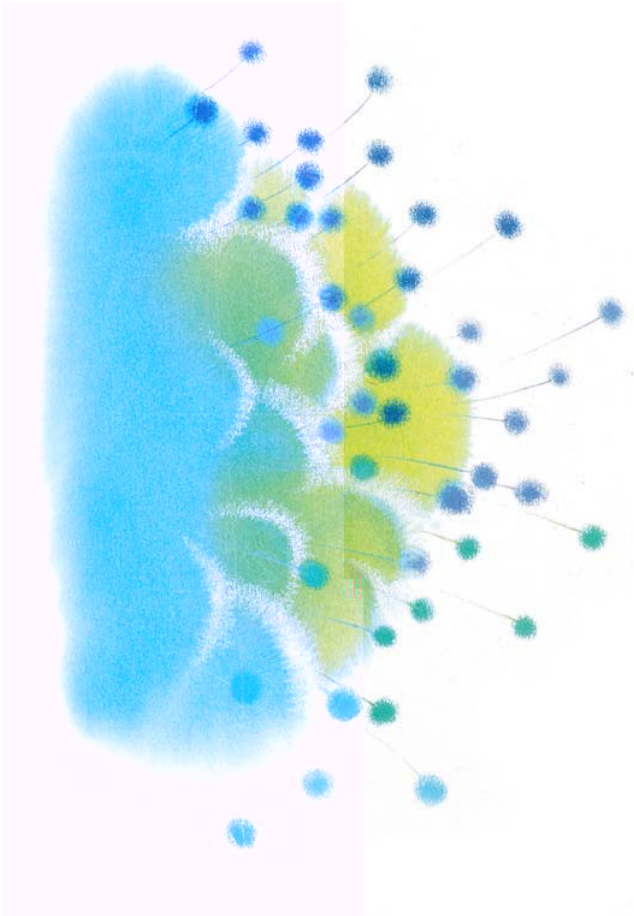

제2편

특성화 · 다기능화 시범운영 실시

Ⅰ. 특성화·다기능화 사업유형
Ⅱ. 시범운영 추진절차 및 내용
Ⅲ. 행정사항

Ⅰ 특성화 · 다기능화 사업유형

1 • 유형개발 개요

기본방향

○ 특성화·다기능화 유형은 지역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지만 동 시범운영에서는 아래와 같이 7개의 사업유형으로 한정

– 이는 특성화·다기능화를 추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며

– 각 유형별로 1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 실시. 단, 해당 시·군·구 내의 사업수행시설은 여러 개가 될 수 있음

※ 예외 : 제7유형(지역사회중심 주민맞춤형 다기능화)은 제1유형~제6유형과 달리 특정한 틀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고 지역욕구 및 특성에 따라 다양한 사업내용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2개 시·군·구에서 실시하고자 함

– 7개 유형에 대한 시범운영을 통해 도출되는 제반 문제점을 보완·검토하여 향후 다양한 특성화·다기능화 사업유형이 개발·시행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특성화·다기능화 유형

구 분		유 형	사업지역수
특성화	유형1	○ 사회복지관의 대상별 특성화	1개 시·군·구
	유형2	○ 사회복지관의 사업별 특성화	1개 시·군·구
다기능화	유형3	○ 장애인복지관의 다기능화	1개 시·군·구
	유형4	○ 노인복지관의 다기능화	1개 시·군·구
	유형5	○ 장애인생활시설의 다기능화	1개 시·군·구
	유형6	○ 노인생활시설의 다기능화	1개 시·군·구
	유형7	○ (지역사회 중심) 주민맞춤형 다기능화	2개 시·군·구

단계별 유형개발 과정

○ 시범운영에서의 사업유형은 3개의 단계를 거쳐서 개발되었음

– (제1단계 : 개념단계) 개념상 다기능화는 가족,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모든 사회복지시설에서 가능하지만,

– (제2단계 : 구상단계) 실제로 해당 지역사회 내에서 다기능화가 필요한지, 다기능화 사업 추진이 지역여건상 가능한지 등을 고려하여 다기능화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를 제한

- 정신질환자의 경우 의료적 성격이 강하여 타 종별 서비스대상자를 수용하기 어렵고,
- 부랑인 및 노숙인의 경우 그 대상자의 특성이 특수하여 타 종별 서비스 대상자간의 공유범위가 협소하며,
- 아동의 경우 현행법상(「아동복지법」 제16조 제2항)으로도 아동복지시설 간의 종합화가 가능하고,
- 한부모가족(모자·부자·미혼모) 및 여성(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등)의 경우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다기능화를 통한 타 종별 서비스대상자와의 서비스 공유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수반되어 다기능화 대상에서 제외

– (제3단계 : 유형개발 단계) 다기능화 제외대상 등 필요 검토사항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7개 유형을 개발

단계별 유형개발 과정

구 분	적용범위
개념단계	○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가능 -가족,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간의 조합
구상단계	○ 다기능화 제외대상 - 정신질환자(의료적 성격이 강하여 타 종별대상 수용애로) - 부랑인 및 노숙인(대상자 특성이 독특하여 공유범위 협소) - 한부모가족 및 여성(개인프라이버시 존중) - 아동(종합화 가능) ○ 공유가능 기관 및 시설 묶음도출 - 장애인 및 노인 간의 조합이 핵심
유형개발 단계	○ 7개 유형 - (특성화 : 2개) 종합사회복지관 대상별・사업별 특성화 - (다기능화 : 5개) 장애인・노인복지관 다기능화, 장애인・노인생활시설 다기능화, 지역사회중심 주민맞춤형 다기능화

2 ● 유형별 사업내용

,

,

,

8 ・ ・ ,

- ,

,

(1) 특성화

목적 및 필요성

○ 한 지역내 동일 또는 유사한 사회복지시설이 다수 설치되어 있어 대상자 및 사업 중복 발생

–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다양한 대상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으로 인해, 다른 사회복지시설 및 종별 복지관간의 대상자 및 기능 중복에 대한 문제가 제기

○ 따라서 다수 설치된 종합사회복지관 중 일부 복지관을 대상별 또는 사업별로 특화하여 지역내 특정 대상에 대한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해 서비스 대상자의 복지체감만족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음

사업추진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방안

○ 네트워크(연계망)는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사업추진주체(해당 시·군·구, 사업수행시설, 유관시설 등)간의 협력체계를 의미

– 이는 특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며 사업유형별 또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구축될 수 있음

○ 기존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민·관/민·민 네트워크(연계망)가 사업 지역내에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

– 시범운영을 위해 신규로 네트워크(연계망)를 구축할 시에도 기존 지역내 네트워크(연계망)와의 관계를 고려해야하며, 신규 네트워크(연계망) 구축방안에 대해서는 사업추진단에서 컨설팅 지원

기대효과

- 종합사회복지관의 대상별 또는 사업별 특성화는 동일 지역내에 다수의 종합사회복지관이 밀집해서 설치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획일적 사업 수행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서비스 수요자의 욕구에 보다 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효과 발생

- 예를 들면, 특정지역에 노인인구가 많거나 노인복지관이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 인근 종합사회복지관의 노인대상 사업을 특성화하여 부족한 공급을 보완

※ 대상별 특성화는 종별 복지관으로의 전환이 아니며 종별복지관의 일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 따라서 종합사회복지관의 기존 사업은 본래대로 수행해야 함

○ 사례

명 칭	서울시 강남구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노인특성화 사업
사업목적	노인독거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수서영구임대단지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노인 대상의 복지서비스 확대
사업지역 및 기간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2009. 1월 ~ 12월(계속사업)
지원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지원내용	동아리활동 지원, 노인프로그램, 노인교육사업 등
소요예산	60백만원(서울시 지원)
운영방식	✱ 서울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사업 실시 ✱ 강남구에 있는 6개 복지관(강남・능인・대청・수서명화・수서・태화종합사회복지관) 중에서 2개 복지관(대청・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을 노인 특화 복지관으로 운영중 ✱ 강남구에는 2개의 노인복지관(논골・강남구노인복지관)이 운영중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외 설치되어 저소득 노인 밀집지역인 수서・일원동에 위치한 2개 복지관(대청・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을 특성화함 ✱ 서울시의 사회복지관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관당 60백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특성화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 복지관의 기존의 조직(복지과)을 활용하여 동아리활동 지원(13개 동아리), 노인교육사업(30개 수업) 등 실시
네트워크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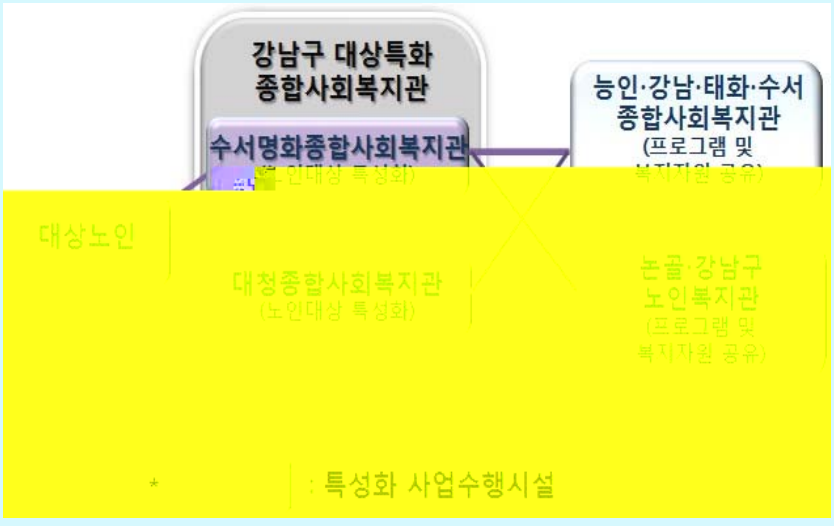

제2유형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별 특성화

○ 사업개요

– 사업별 특성화 대상시설

• 종합사회복지관

– 사업별 특성화 가능사업(예시)

• 종합사회복지관의 포괄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등

포 괄 사 업	단 위 사 업	세 부 사 업
가족복지사업	-가족관계 증진 -가족기능 보완 -가정문제 해결・치료 -부양가족 지원 등	-가족・부모교육 및 상담 -방과후 프로그램 -음악・놀이・미술치료 -치매노인・장애인 가족지원 등
지역사회보호사업	-급식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경제적 지원 -일상생활 지원 -정서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등	-밑반찬・식사배달 -물리・재활치료, 방문간호 -생활용품 지원 -목욕, 이・미용, 주거환경개선 -멘토링 -노인・장애인 주간・단기보호 등
지역사회조직사업	-주민조직화 및 교육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복지 증진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개발 등	-주민지도자 교육, 환경교육 -지역복지협의회 활동, 연계사업 -마을잔치, 경로당 운영 -자원봉사자 연계・관리, 후원금품 전달 등
교육・문화사업	-아동・청소년 기능교육 -성인 기능교실 -노인 여가문화 -문화복지 등	-컴퓨터・피아노 교실 -자격증 취득교육 -노래교실, 노인대학 -주민문화행사 등
자활사업	-직업기능 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자활공동체 육성 등	-공예품제작, 컴퓨터훈련 -창업정보센터, 창업지도 -근로의욕 고취프로그램 -자활공동체 창업 등

※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 pp. 9 ~ pp. 16 참조

, ,

- , ,
- , ,
 ,
- , ( ) ( )
 ( ) ( )

○ 추진방안

– 종합사회복지관이 동일 지역내에 다수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일부 복지관(주사업기관)은 복지관 공통사업 또는 특수 사업 등 지역 욕구에 맞게 사업별 특화하여 서비스를 제공 및 총괄 집행하고,
- 지역내 사업별 특성화에 참여하지 않는 타 종합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유관기관)은 특화 사업에 참여하고자 복지관에 방문한 서비스이용자를 접수 · 상담하여 주사업기관에 의뢰
- 이 때, 주사업기관과 유관기관은 특성화가 가능한 사업종류 및 특성화를 위한 역할분담 등에 대한 협의 및 상호협력이 필수

※ 종합사회복지관의 기존 사업은 본래대로 수행

○ 사례

명　칭	송파구재가복지연합회 누리보듬사업단 통합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목적	송파구내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기다리지 않고 높은 질의 주거환경개선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함
사업지역 및 기간	서울시 송파구　2008. 1월 ~ 2009. 11월(2년간)
지원대상	송파구내 거주 저소득 가정(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등)
지원내용	도배, 장판교체, 보일러 수리 및 교체, 싱크대 수리 및 교체, 가구수리 및 교체
소요예산	20백만원 (자부담 8백만원+공동모금회 지원금 12백만원) ※ 자부담=전액후원
운영방식	* 구내 민간 사회복지시설 및 행정기관(송파구청, 동사무소)간 구축된 네트워크 기반위에 개별 시설에서 진행해 오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 개의 주관기관을 선정, 서비스 기능조정을 통해 서비스를 광역화함 * 서비스 기능조정이라 함은 단순히 서비스를 한 개 기관에 위임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비스통합과 더불어 자원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서비스이용자는 거주지 관할 시설의 자원보유 상황에 상관없이 기다리지 않고 질높은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본 사례의 특징은 통합사례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사례관리대상자를 선정 후 별도의 통합주거환경개선서비스 지원 체계를 두고 있다는 점임. 이는 서비스신청자 선정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별도의 사정체계(assessment system)를 두고 있다는 것으로 주관기관 실무자와 시민사회단체 실무자간 구축된 TFT가 의뢰대상 가정을 방문후 회의를 거쳐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면에서 자원의 효율적 집행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분석됨
네트워크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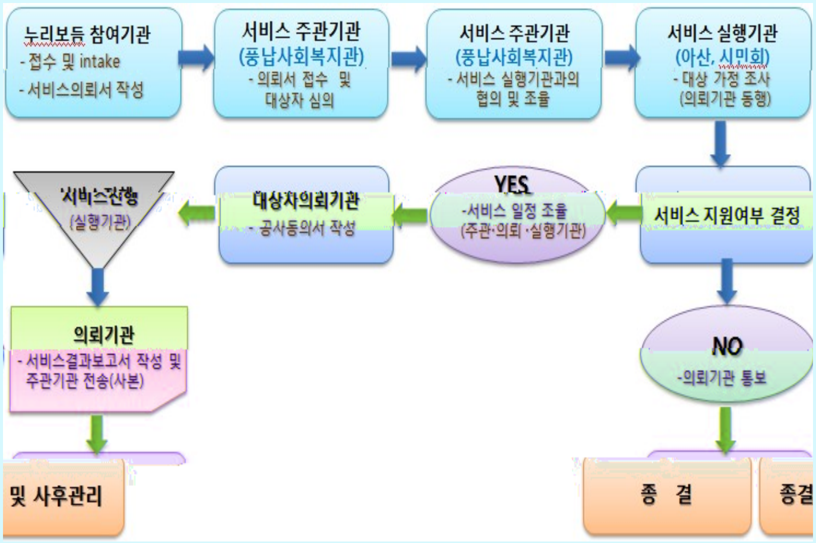

(2) 다기능화

목적 및 필요성

○ 서비스대상자의 복지수요가 존재하고, 시설의 서비스 제공 의사 및 유휴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직적인 현 법적·제도적 요소로 인해 탄력적으로 서비스 공급·이용이 불가능

– 또한 시·군·구 내 시설이 존재하더라도 생활권역을 넘어 위치한 경우, 이동거리로 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서비스대상자 발생

○ 따라서 기존의 제도적 경직성을 극복하고 기 존재하던 시설에서 해당 지역 현황에 맞게 유연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

– 이에 서비스대상자가 보다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개방적인 운영 방식이 도입되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음

사업추진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방안

○ 네트워크(연계망)는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사업추진주체(해당 시·군·구, 사업수행시설, 유관시설 등) 간의 협력체계를 의미

– 이는 다기능화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며 사업유형별 또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구축될 수 있음

○ 기존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민·관/민·민 네트워크(연계망)가 시범 지역내에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의 일부 사업

※ [별첨 : 시설유형별 주요사업] 참조

(, ,)

- , , ,

- ,

○ 추진방안

– 해당 시·군·구에 장애인복지관만 존재하지만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복지시설을 추가로 신설하기 어렵거나,

– 노인복지관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노인 등 서비스 잠재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의 여력이 못 미쳐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

• 시설 이용대상을 장애인으로 한정한 장애인복지관에서 노인 등 이용대상을 확장하고, 노인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되는 사업 중 장애인복지관과 공유 가능한 영역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복지관의 다기능화 실시

※ 장애인복지관의 기존 사업은 본래대로 수행

예시

명 칭	소외 노인가정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 : 으라차차!! 활기찬 노후생활
사업목적	종합사회복지관의 여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내 노인들에게 장애인복지관에서 노인의 돌봄 및 사회참여 독려
사업지역 및 기간	담양군 ○○면 2010. 3월 ~ 2010. 11월 (9개월간)
지원대상	○○면에 거주하는 노인가정 중 욕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20가구
지원내용	* 취미교육교실 개설(종이접기, 민속놀이) : 어르신 반을 신규로 개설 * 교통안전봉사사업 : 인근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자원봉사대 발족 * 식사배달서비스 : 장애인복지관 식당에서 자원봉사자 활용하여 식사배달 * 목욕서비스 : 장애인목욕봉사를 노인대상으로 확대
소요예산	6,000만원(전액 국고보조)
운영방식	* 지역내 노인복지시설이 없어서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노인분들 중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분들에 대해 장애인복지관이 기존 수행기능을 약간 응용하여 노인분들에게 상기의 서비스를 제공 * 장애인복지관 지역복지를 총괄하는 팀장이 수퍼바이저가 되고 새로운 1명의 실무조정자를 채용하여 사업을 진행 * 사업착수 전에 우선 해당 지역내 노인들이 원하는 욕구가 상기 4가지 중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사·상담하여 서비스 총량을 결정하고 지원시기를 결정 * 해당 서비스가 지역내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되는 것이 아닌지 점검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을 군청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지속적으로 보고
네트워크 체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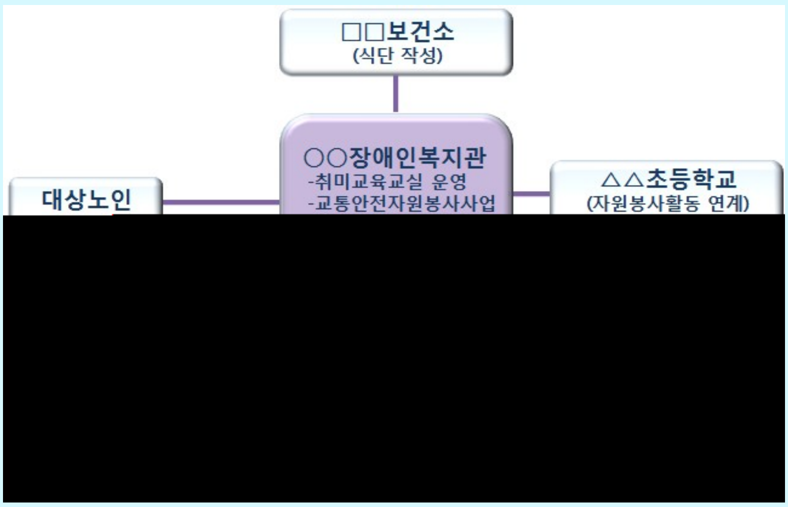 [redacted]

제4유형 노인복지관의 다기능화

○ 사업개요

–다기능화 대상시설

- 노인복지관

– 다기능화 대상사업(예시)

-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의 일부 사업

※ [별첨 : 시설유형별 주요사업] 참조

(, ,)

- , , , ,
,

- ,

○ 추진방안

– 해당 시·군·구에 노인복지관만 존재하지만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복지시설을 추가로 신설하기 어렵거나,

– 장애인복지관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 등 서비스 잠재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의 여력이 못 미쳐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

- 시설 이용대상을 노인으로 한정한 노인복지관에서 장애인 등 이용대상을 확장하고,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되는 사업 중 노인복지관과 공유 가능한 영역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인복지관의 다기능화 실시

※ 노인복지관의 기존 사업은 본래대로 수행

○ 예시

명 칭	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사업
사업목적	종합사회복지관의 여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내 장애인들에게 노인복지관에서 장애인의 돌봄 및 사회참여 독려
사업지역 및 기간	순천군 ○○면 2010. 3월 ~ 2010. 11월(9개월)
지원대상	○○면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 건강증진사업 : 물리치료, 한방요법 등을 통한 건강증진 ✱ 장애인 가사지원서비스 : 2~3급 장애인에 대한 가사지원 ✱ 장애인 반찬배달서비스 : 자원봉사자 활용하여 반찬배달 ✱ 장애인 일자리제공 : 노인적합형 일자리 속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소요예산	6,000만원(전액 국고보조)
운영방식	✱ 노인복지관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장애인 건강증진 도모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 단독가구에 대한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 ✱ 반찬배달서비스는 노인복지관의 경로식당에서 생산하는 반찬을 재가장애인에게 2일에 1회 제공하되,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활용 ✱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함에 있어 틈새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여 이를 시험적으로 적용하고 노인과 장애인이 어울려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모색
네트워크 체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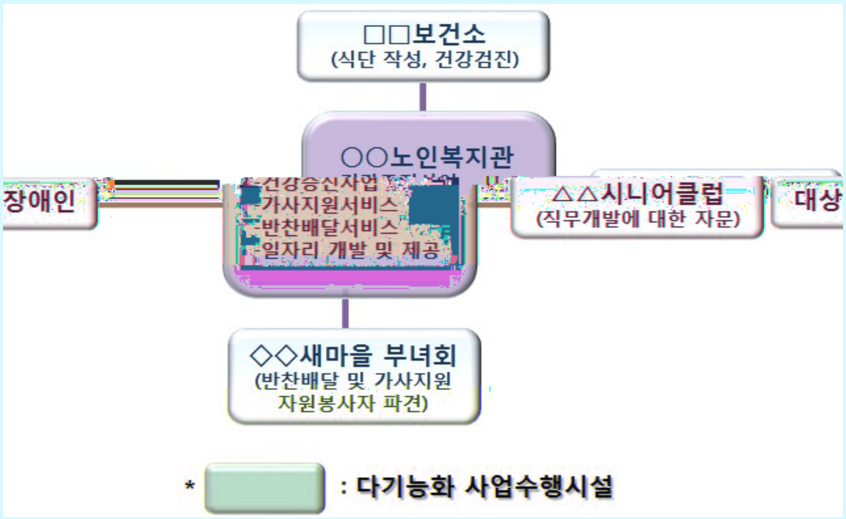

○ 사업개요

– 다기능화 대상시설

• 장애인생활시설

– 다기능화 가능사업(예시)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등의 일부 사업

•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방문목욕서비스, 주·야간 및 단기보호서비스) 등의 일부 사업

,
.
- , , , ,
,
- , , ,

○ 추진방안

– 장애인생활시설은 설치되어 있으나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등 모든 종별 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복지관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지역사회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거나,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등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해 장애인생활시설 인근의 재가복지대상자 또는 서비스 잠재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의 여력이 없는 경우,

•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재가장애인 등 재가복지대상자에 대해 필요한 사업 중 일부(예. 재가장애인복지사업 등)를 제공하거나 노인 등 대상을 확장하여 장애인생활시설의 다기능화 실시

※ 장애인생활시설의 기존 사업은 본래대로 수행

○ 예시

명 칭	재가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장애인생활시설 다기능화 사업
사업목적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직업훈련용 기구류 및 기계류 등 각종 설비를 이용하여 시설장애인과 함께 재가장애인에게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운영
사업지역 및 기간	제주시 ○○읍 / 2010. 3월 ~ 2010. 11월(9개월간)
지원대상	직업훈련이 가능한 등록장애인(재가장애인)
지원내용	재활치료(의료재활, 심리·사회적 재활 등), 재활직업재활(준비훈련, 응용훈련, 직업훈련 등), 취업알선 등
소요예산	50백만원(전액 국고지원)
운영방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관 등 재가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사회복지시설이 없고 장애인생활시설이 1개소 있는 지역에서 재가장애인을 상대로 직업재활프로그램를 운영하는 상황이므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가 필수적 ✱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직업재활을 위한 장비 및 설비를 최대한 활용 ✱ 종합사회복지관 및 지역자활센터 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및 복지자원 등을 공유 ✱ 지역내 기업, 공장 등과 계획에 의한 일정에 따라 인사 담당 등 관계자를 만나 장애인 직업훈련이나 취업에 대해 업무협조체계를 구축
네트워크 체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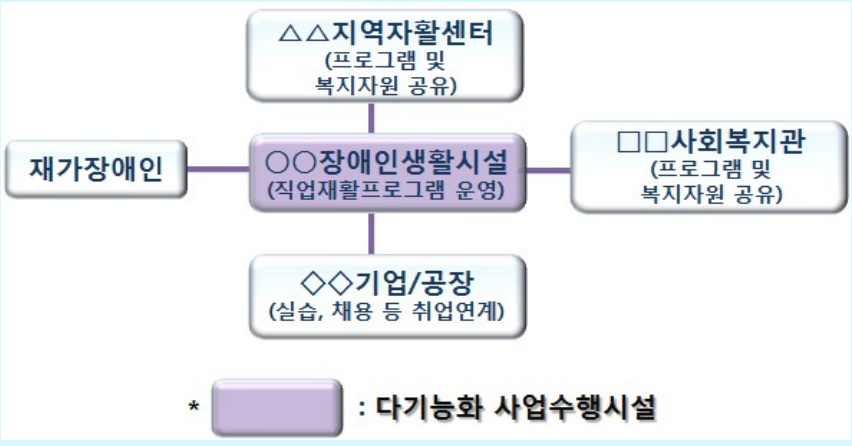

○ 사업개요

– 다기능화 대상시설

• 노인생활시설

– 다기능화 가능사업(예시)

•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방문목욕서비스, 주·야간 및 단기보호서비스) 등의 일부 사업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등의 일부 사업

, .

- , , , ,

,

- , , ,

○ 추진방안

– 노인생활시설은 설치되어 있으나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등 모든 종별 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복지관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지역사회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거나,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등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해 노인생활시설 인근의 재가복지대상자 또는 서비스 잠재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의 여력이 없는 경우,

• 노인생활시설에서 재가노인 등 재가복지대상자에 대해 필요한 사업 중 일부(예. 방문요양·방문목욕사업 등)를 제공하거나 장애인 등 대상을 확장하여 노인생활시설의 다기능화 실시

※ 노인생활시설의 기존 사업은 본래대로 수행

○ 사례

명 칭	노인 건강사업 지원을 위한 기장복지네트워크
사업목적	지역내 노인의 건강한 독립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공공-민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
사업지역 및 기간	기장군 일광면 2009. 7월~2010. 6월(1년간)
지원대상	장기요양급여 등급외 A,B,C 판정자, 장기요양급여 등급내 판정자 중 미이용자, 독거노인, 고령노부부, 조손가구 및 기타 서비스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일반노인
지원내용	건강지원서비스, 생활지원서비스, 정신건강서비스, 건강예방서비스, 실무자 및 자원봉사자 교육 등
소요예산	173백만원('09년 80백만원, '10년 93백만원)(전액 군비)
운영방식	✱ 군청에 코디네이터 1명을 두고, 지역에 2명의 실무사례관리사를 두어 사례관리사 1인당 약 60사례를 담당 ✱ 실제 서비스 제공인력과 관련하여, - 물리치료서비스는 기장장애인종합복지관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방문하여 주 1~2회 실시 - 가사간병도우미는 희망근로·자활근로사업에서 지원하여 효성노인건강센터에서 파견 - 도시락·반찬·대형빨래는 기장지역자활센터와 자원봉사센터에서 담당 - 전문상담서비스는 부산대학교 BK사업팀에서 알콜중독, 우울증 치료, 호스피스 봉사에 대해 전문가가 주 2회 방문 - 노인포함 가구의 복합적·고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네트워크에 연계해서 종합적 접근 추진
네트워크 체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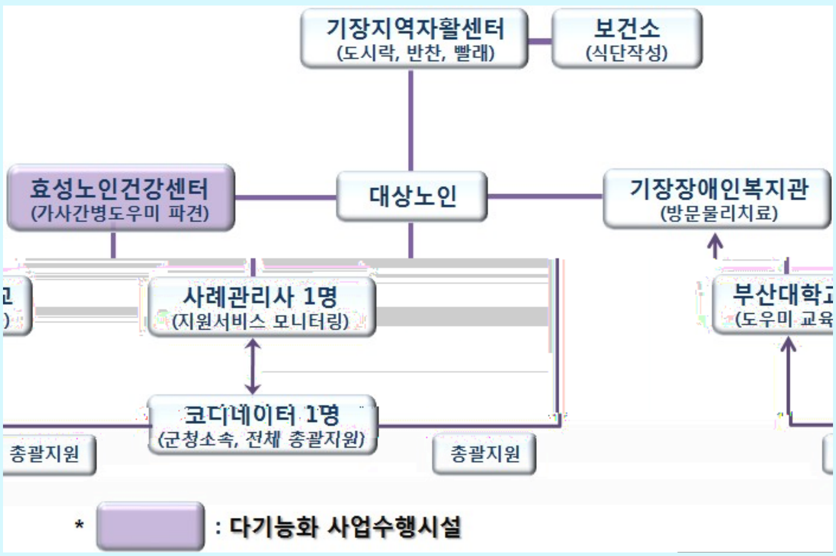

○ 사업개요

– 다기능화 대상시설

• 모든 종류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가능

– 다기능화 가능사업(예시)

• 모든 종류의 사회복지시설 사업 다기능화 가능. 단, 대상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상자 및 사업의 범위는 적정수준으로 제한

○ 추진방안

– 다기능화 제1유형~제6유형과는 달리 본 유형은 특정한 틀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고 해당 지자체와 시범지역내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 등이 지역사회 실정에 맞게 시범지역에 필요한 사업종류, 내용, 네트워크 구축방식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탄력적으로 다기능화 추진

유형별 주요 사업내용 요약

구 분		유 형	사 업 내 용
특성화	유형1	종합사회복지관 대상별 특성화	사회복지관이 다수존재·근접설치·유사서비스 제공 등으로 서비스기능 및 대상자의 일부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사회복지관을 특성화하여 지역내 특정 대상에 대한 서비스 확대
	유형2	종합사회복지관 사업별 특성화	사회복지관이 다수존재·근접설치·유사서비스 제공 등으로 서비스 기능 및 대상자의 일부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공통사업 또는 특정사업을 일부 사회복지관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서비스 제공의 효율화 추진
다기능화	유형3	장애인복지관 다기능화	대상별로 이용이 제한된 장애인복지관에서 서비스 이용대상의 확대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하여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유가능한 영역의 서비스 확대
	유형4	노인복지관 다기능화	대상별로 이용이 제한된 노인복지관에서 서비스 이용대상의 확대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하여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유가능한 영역의 서비스 확대
	유형5	장애인생활시설 다기능화	장애인생활시설이 복지관의 기능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행함으로써 복지관과 생활시설간 불균형한 시설분포 상황의 문제점을 보충하여 최대한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수행
	유형6	노인생활시설 다기능화	노인생활시설이 복지관의 기능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행함으로써 복지관과 생활시설간 불균형한 시설분포 상황의 문제점을 보충하여 최대한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수행
	유형7	[지역사회 중심] 주민맞춤형 다기능화	지자체와 사회복지시설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지역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유형과 양을 결정함으로써 주민맞춤형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별첨] 시설유형별 주요사업

구 분	시설유형	세부 시설종류*에 따른 주요사업
종 합	종합사회복지관	❑ 종합사회복지관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장애인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건강관리 ❖급식 ❖생활지도 ❖재활사업 등 ❑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의료재활 ❖생활지도 ❖특수교육 등 ❑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의료재활 ❖생활지도 ❖조기 특수교육 등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상담지도사업 ❖의료재활사업 ❖교육재활사업 ❖직업재활사업 ❖사회심리재활사업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스포츠 및 여가활동사업 ❖정보제공사업 ❖수화관련사업 ❖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사업 ❖사회교육사업 ❖지역사회 자원개발사업 ❖홍보·계몽사업 ❖조사연구사업 ❖활동보조서비스사업 ❖기타 사업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차량운행 ❖재활치료사업 ❖여행, 견학 및 취미생활 지원 ❖교육지도 ❖가족상담 ❖기타사업 ❑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자립생활지원 ❖사회적 인지기술 지원 ❖정서안정·여가 지원 ❖가족상담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 보호작업장 ❖보호고용 ❖훈련관리 및 작업관리 ❖재활프로그램 등 ❑ 장애인 근로사업장 ❖ 보호고용 ❖재활프로그램 ❖통근지원 등
노인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건강관리 ❖급식 ❖훈련관리 ❖취미여가활동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건강관리 ❖급식 ❖훈련관리 ❖취미여가활동 등

구 분	시설유형	세부 시설종류*에 따른 주요사업
노인 (계속)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기본사업 : 평생교육 · 취미여가사업, 고용지원, 기능회복사업, 정서지원사업, 사회참여사업, 경로당 운영혁신사업, 노인복지관운영, 사업관리 ❖선택사업 : 식사배달사업, 방문보건사업, 목욕서비스사업,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노인주거 개선사업, 교통안전봉사사업 등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신체활동지원서비스 ❖가사활동지원서비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상담서비스 ❖장애노인 및 보호자교육 등 ❑ 주야간보호서비스 ❖급식 및 목욕서비스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 단기보호서비스 ❖급식 및 치료 ❖건강관리 ❖훈련관리 ❖취미여가활동 등 ❑ 방문목욕서비스 ❖입 · 목욕시 이동보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

* 세부 시설종류는 본 지침상 특성화 · 다기능화 대상시설 및 기능 공유시설로 언급된 시설에 한해서 기술

**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009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09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요령안내」 및 관련 법령(「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참조

Ⅱ 시범운영 추진절차 및 내용

1 ● 기본 방향 및 추진 절차

시범 운영 기본방향

- · ,
  ’10 “ ”
- · , · ·
- ·

사업 추진 절차

사업추진단 공모	⇨	사업지역 공모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사업수행시설 선정	⇨	사업지역 선정 및 통보
복지부(1월)		추진단(2월)		시·군·구(2월)		추진단(2월)
사업실시 *최종사업실행 계획서 수립	⇨	중간평가/ 최종평가	⇨	사업결과보고 및 발표회	⇨	사후관리
사업수행시설(3월)		추진단(5월/11월)		복지부· 추진단(11월)		복지부· 추진단(12월)

2 • 프로세스별 업무 내용

구 분	업 무 내 용
사업지역 공모	

3 • 세부 처리 절차

(1) (시·군·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 ·
,

시범 운영을 위한 사전 고려사항

○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내 지역의 사회복지인프라 수급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관내 지역의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및 서비스 중복 여부 파악

-

-

○ 특성화·다기능화 가능한 관내 시설 및 네트워크 등 복지 인프라 역량 점검

- ·
,

-
,

사업계획서 작성

○ 시·군·구청장은 특성화·다기능화 사업지역 선정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관내 지역에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특성에 따라 필요성을 판단하여 적합한 사업 유형을 선택

– 해당 지역의 특성화 또는 다기능화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인 “사업계획서”를 작성

○ “사업계획서”란 시·군·구청에서 특성화·다기능화 시범 운영에 참여하기 위해 수립하는 기본 계획

– [서식 1] 양식에 따라 사업 유형을 명시하여 ① 사업 시행 취지 ② 사업 추진개요 ③ 사업내용 ④ 사업추진체계 및 각 역할 등을 포함하여 작성

○ 작성 시 유의 사항

– 사업추진 시 시·도청, 시·군·구청,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수행시설 등의 각 사업 추진체계상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기술

– 본 계획서를 토대로 심의가 진행되므로, 사업 추진 취지 및 필요성, 사업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목표 예시>

·특 성 화 : 서비스 중복 해소를 통한 서비스 공급확대 및 특화된 ㅇㅇ서비스 신규 제공

·다기능화 : ㅇㅇ 사업 추가 실시로 인한 서비스 공급확대 ㅇㅇ 명

시범운영에 대한 홍보 및 의견 수렴

○ 특성화·다기능화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민·관의 협조가 절대적이므로 계획 수립 전 사업 홍보 및 의견 수렴 실시

- 보건복지가족부 시범 운영 공고를 관내 지역 시설에 송부하여 민간시설 및 관련 단체에서 동 사업에 대해 숙지하도록 조치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민·관 협의체를 활용하여 지역내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계획서에 첨부

사업수행시설 선정

- 시·군·구청은 공모* 등을 통해 사업 수행에 적합한 역량을 구비한 사업수행시설을 선정

  * 사업수행시설의 선정 등의 공정성을 위해 공모를 통해 적합한 사업수행시설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역여건에 따라 예외 인정

  * 사업수행시설 공모 시 신청기관에 대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민·관 협의체를 통해 ① 시설의 사업 수행 능력(수행인력의 전문성) ② 사업수행 여건(시설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 (시설)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및 시·군·구청 제출**

- . . “ ” “ ” .
  .
- “ ”
  ,

  - [2]

사업지역 신청서 등 복지부 제출

- 시·군·구청은 ① 사업지역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사업수행시설의 사업실행계획서 ④ 시·도 의견서 등을 사업추진단에 제출

(2) (사업추진단) 사업지역 선정 및 통보

, · ·
8
·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사업추진단은 시범운영으로 각 유형별 가장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군·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업실행계획서 등을 심의

○ 선정위원회 구성

– 위　　원 : 보건복지가족부, 사업추진단장, 각 컨설팅단장 및 관련 시설협회 등 전문가로 구성

– 심의방식 : 서류심사 원칙

○ 심의 기준

– 신청지역의 네트워크 및 사업계획의 사업 유형별 적합성 심사

– 신청지역 내 인구 및 사회복지 인프라 현황에 따른 특성화·다기능화 사업 필요성 심사

– 사업수행시설 사업실행계획 적절성 및 사업추진역량 심사

특성화 사업계획서 심의 기준

대분류	내 용
지역여건	○ 유사시설 복수 존재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복 정도
	○ 지역내 인구 현황, 지역현황, 사회경제적 현황 등 여건에 비추어 서비스 특성화 필요 정도
	○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한 지역 내 복지 욕구
	○ 특성화 추진 가능한 지역 내 시설 등 추진 체계의 역량 정도
사업내용	○ 특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역 내 복지 욕구 반영 정도, 필요성, 시급성 - 시·도 검토의견 반영
	○ 사업의 목표의 구체성 및 적합도
사업내용	○ 사업 추진체계 역할의 구체성
	○ 특성화 사업의 대상자 수 및 대상자 발굴 시스템
	○ 서비스 제공 방식의 타당성
	○ 네트워크 구축의 구체성
	○ 서비스 중복가능성 발굴·해소 전략
	○ 예산의 활용 정도의 적합성
	○ 사업 성과 관리 방안의 적합성
기 타	○ 특성화 유형에 적합한 지역적 요소

다기능화 사업계획서 심의 기준

대분류	내 용
지역여건	○ 서비스 사각지대 정도 - 다기능화 하고자 하는 서비스 소외 대상자 비율 등
	○ 지역내 인구 현황, 지역현황, 사회경제적 현황 등 여건에 비추어 다기능화 필요 정도
	○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한 지역 내 복지 욕구
	○ 다기능화 추진 가능한 지역 내 시설 등 추진 체계의 역량 정도
사업내용	○ 다기능화 하고자 하는 사업의 지역 내 복지 욕구 반영 정도, 필요성, 시급성 - 시·도 검토의견 반영
	○ 사업의 목표의 구체성 및 적합도

대 분 류	내 용
사 업 내 용	○ 사업 추진체계 역할의 구체성
	○ 다기능화 사업의 대상자 수 및 대상자 발굴 시스템
	○ 서비스 제공 방식의 타당성
	○ 네트워크 구축의 구체성
	○ 서비스 누락가능성 발굴·해소 전략
	○ 예산의 활용 정도의 적합성
	○ 사업 성과 관리 방안의 적합성
기 타	○ 다기능화 유형에 적합한 지역적 요소

사업실행계획서 심의기준

기술 영역	세부 내용
사 업 목 표	○ 목표의 적합성 및 달성 가능성 - 서비스 공급량(단위 및 횟수) - 서비스 이용희망자 사각지대 해소율
사 업 범 위	○ 서비스 제공 범위 및 대상자의 적합성
서 비 스 양 과 질	○ 서비스의 양의 적정성 ○ 서비스 수준의 적정성 - 제공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사자의 전문성 보유 여부 - 시설의 유휴공간 및 인력 보유 여부
서 비 스 제 공 방 식	○ 서비스 제공방식이 이용자 중심인지 여부 ○ 서비스 제공기관간의 연계협력 정도
예 산 활 용 방 안	○ 예산 활용 방안이 적절성

사업지역 선정 통보

- 사업추진단은 선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각 유형별 시범운영에 적합한 지역 8개를 선정하여 각 시·군·구청에 대해 통보
- 사업추진단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군·구청이 수립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검토 후 수정 가능하며, “최종 사업계획서”를 시·군·구청에 통보
- 사업수행시설에 대해 사업 실시를 위해 정해진 기한 내 “최종사업실행계획서” 수립하도록 요청

(3) (사업수행시설) 최종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최종 사업실행계획서 수립

- “최종 사업실행계획서”는 사업수행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사업 실시를 위해 최종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 이를 근거로 예산 배정 및 정산과 평가를 실시하므로
  - 사업 수량 및 사업비 집행 계획을 구체적이며 정확히 작성([서식 5] 참고)
- 사업추진단은 시설이 “최종 사업실행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컨설팅하여 특성화 또는 다기능화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정 가능

최종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 시설은 사업추진단의 컨설팅에 따라 수정된 최종 사업실행계획서를 정해진 기한 내 사업추진단에 제출

최종 사업실행계획서 승인

- 사업추진단은 시설의 최종 사업실행계획서를 검토하여 시설에 승인 통보

(4) 사업 실시

· , · · ,
,

시·군·구

- 사업 실시 지역의 특성화·다기능화 사업 수행 담당 공무원은 사업 지역별로 구성되는 『지방컨설팅단』의 당연직위원으로 참여
- 시·군·구청은 사업 실시를 위해 사업추진단의 활동에 적극 협조
- 시·군·구청은 사업수행시설의 사업 실시에 대한 행정 및 예산 관리 감독 실시

사업수행시설

- 사업수행시설은 승인 받은 최종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라 특성화 또는 다기능화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 단, 사정변경에 따라 사업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지방컨설팅단』의 사전 컨설팅을 받은 후, 반드시 사업추진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변경에 따라 사업비 집행 계획에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서식 6]에 의거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추진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추진단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다기능화에 따라 추가되는 사업의 운영 및 관리 기준은 소관 법령 및 지침에 의함
- 사업추진에 필요한 유관 시설과의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시범 운영 협력 시설 등

- 시범운영 사업수행시설의 네트워크 협력 시설 및 사업 유관 기관은 사업수행시설의 특성화·다기능화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함

사업추진단

사업추진단 구성도

* 사업추진단장 및 각 컨설팅단장은 각 분야에 관심과 전문지식을 가진 교수로 구성

** 현장 컨설팅 지원단 : 1인당 2개 유형(지역)의 시범운영을 총괄 지원하며, 현장에 대한 이해가 높고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사람으로 선정

- 지역별 실태 조사 등에 기초하여 사업 취지 및 지역현황에 맞는 컨설팅을 통해 바람직한 특성화·다기능화 방향 제시
- 사업수행시설의 특성화·다기능화 운영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일정별 추진 내용에 대한 관리

- 각 지역 특성에 따른 특성화·다기능화 수행을 위한 네트워크 모형 제시 등
- 사업수행시설을 방문하여 사업 활동 모니터링 실시, 특성화·다기능화 수행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및 『지방 컨설팅단』의 정기회의 개최 지원
- 시범운영 중간 및 최종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마련
- 그 외 기타 특성화·다기능화 사업 수행을 위해 시·군·구청과 사업 수행시설의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

(5) (사업추진단) 중간 평가

사업추진단

- 관내 사업수행시설에 “시범운영 중간보고서”를 5월 중 기한 내 제출하도록 요청
- 관내 수행시설의 시범 운영 중간 보고서를 취합하여 시범 운영 중간 평가 실시
- 중간 평가를 통해 시범 운영 방향 및 사업 부진 기관에 대해 『지방 컨설팅단』 회의를 통해 사업 계획 수정 가능
- 사업 부진 시설 운영에 대한 컨설팅 실시
- 중간 평가 결과에 대해 관할 시·군·구청 및 복지부 보고

사업수행시설

- 사업 중간 실적 보고서를 사업추진단으로 제출
  - 사업 추진 중간 성과 및 애로사항 등 보고

시·군·구청

- 사업추진단의 중간 평가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
- 중간 평가 결과에 따라 관할 시설 행정 지도 감독

(6) (사업추진단) 최종평가

(사업수행시설) 사업수행 최종보고서 제출

- 사업수행시설은 사업 성과 및 예산 집행 정산서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 최종보고서를 정해진 기한 내 해당 사업추진단에 제출

(시·군·구) 사업실시에 대한 운영 최종 의견서 제출

- 시·군·구청은 사업실시에 따른 운영 최종 의견서 제출 등 최종 평가 시 사업추진단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
- 최종 평가결과에 따라 관할 시설 행정 지도 감독

(사업추진단) 최종보고서 평가 및 분석

- 사업추진단은 11월 중 기한 내 사업 성과 및 예산집행 정산서 등을 포함한 사업 수행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사업수행 시설에 요청
- 8개 지역 시범 운영 최종보고서를 취합 후 각 지역의 특성화·다기능화 성과를 분석 및 우수 사례 발굴
- 최종 평가 결과에 대해 관할 시·군·구청 및 복지부 보고
- 평가 기준

대분류	중 분 류	소 분 류
계획 수립	목표 설정	○ 초기 수립된 사업목표의 적절한 방향성, 실현가능성, 구체성
	목표 달성과정	○ 목표설정 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발생에 대해 적절한 대응 여부
		○ 계획 수립 시 예정했던 일정대로 추진하였는지 여부
운영 과정	사업추진 기반	○ 사업에 필요한 인력 규모의 전문성 보유 여부
		○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의 물리적 기반 보유 여부
	홍보 전략	○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여부
		○ 홍보수단의 대상자 접근성 및 이해 용이성 여부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네트워크 구성 : 관계기관 수 - 특성화·다기능화 사업과 관련된 지역내 모든 기관 중 이 사업에 실제 참여한 기관 비율 - 참여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실제 참여하지 못한 기관의 불참이유
		○ 네트워크 활성화 : - 사업을 통해 조정된 서비스 중복 사례 수
사업 성과	서비스 공급량	○ 특성화·다기능화를 통해 제공된 서비스의 대상자 수 - (가능한 경우) 서비스 수요 혹은 서비스 이용 희망자 수 대비 서비스 제공자 수(사각지대 해소율)
		○ 목표달성도 - 서비스 실제공급량/서비스 공급계획량 (횟수)
	서비스의 질적 개선	○ 연계 제공된 서비스 횟수
		○ 특성화·다기능화 사업을 통해 새롭게 제공된 서비스의 제공 방식의 향상 여부(전문인력 채용, 전문 프로그램 실시 등)
	효율성 제고	○ 예산절감율 : (A-B/A) - 다기능화 사업을 신규 시설설치를 통해 수행할 경우 소요되는 단위비용(A) 대비 다기능화 사업 투입 비용(B)
	이용자 만족	○ 특성화·다기능화 사업을 통해 신규로 사업을 제공받은 대상자들의 서비스 만족도
		○ 기존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 - 특성화·다기능화 사업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의 만족도 증감 여부

(7) (복지부 · 사업추진단) 시범운영 결과보고 및 발표회 개최

○ (복지부 · 사업추진단) 발표회 개최

– 사업추진단은 8개 지역에 대한 시범운영 성과 및 보완점 등을 각 시 · 군 · 구청에 통보

– 각 지역의 운영 성과 및 평가에 따른 우수사례를 대외 발표

○ (시 · 군 · 구 · 사업수행시설) 발표회 참석 및 발표

– 시 · 군 · 구 및 사업수행시설은 발표회에 참석하여, 향후 특성화 · 다기능화 방안 발표

Ⅲ 행정 사항

1 ● 특성화·다기능화 사업 추진 관련 시·군·구청 행정체계

(1) 담당 조직

■ 『시설·법인팀』 설치 지역

○ 공공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따라 지자체가 조직개편 추진 시 『시설·법인팀』이 특성화·다기능화 사업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 시범 운영 신청 및 중간·최종 평가 등 시범운영과 관련 제반절차를 담당

■ 『시설·법인팀』 미설치 지역

○ 총괄조직

– 지역복지계획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에서 특성화·다기능화 사업 총괄

– 시범 운영 신청 및 중간·최종 평가 등 시범운영과 관련 제반절차를 담당

○ 다기능화에 따른 추가사업에 대한 예산 및 행정 관리 부서

- 지자체가 1, 2 안 중 지역 실정에 더 적합한 방안을 선택하여 다기능화 사업에 대해 예산 및 행정 관리 실시
- 단,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두 부서의 긴밀한 협조체계 필요

( )

○ 〈1안 : 시설 담당 부서〉

- 기존 시설의 예산 집행의 융통적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다기능화의 특성상 바람직
- 시설관리 주체와 사업관리 주체가 일원화된다는 측면에서 행정적으로 편리하며, 시설입장에서도 보고대상이 일원화되어 편리
- 시설담당부서가 다기능화 사업에 대해 지도감독의 전문성의 한계 초래 가능

○ 〈2안 : 사업 담당 부서〉

- 추가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예산 집행 및 행정 관리 측면 바람직
- 동일 시설에 대해 둘 이상의 지도 감독 부서가 되므로 비효율 발생 가능

(2) 지방정부간 협조 관계

○ 시·도청과 시·군·구청은 특성화, 다기능화 시범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긴밀한 협조 필요

○ 시·군·구청은 시범운영 참여를 위해 시·도청의 추천을 받아 복지부로 사업계획서 제출

○ 시·군·구청은 시·도청으로 최종 사업계획서, 중간점검보고서, 최종 보고서를 제출

○ 시·도청은 시차원에서 설치 운영되는 시설의 다기능화 또는 특성화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

2 • 예산의 배정 및 집행

(1) 예산 지원 방식

■ 예산 개요

○ 사업 예산 : 국비 745백만원

○ 지원 방식 : 민간경상보조(국비 100%)

○ 집행 절차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추진단'에 민간경상보조로 일괄 교부 후, 시설로 분기별 지원

– 사업수행시설은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거 분기별(3월, 6월, 9월) 필요한 사업비를 사업추진단으로 지원 신청([서식 7] 참고)

예산 집행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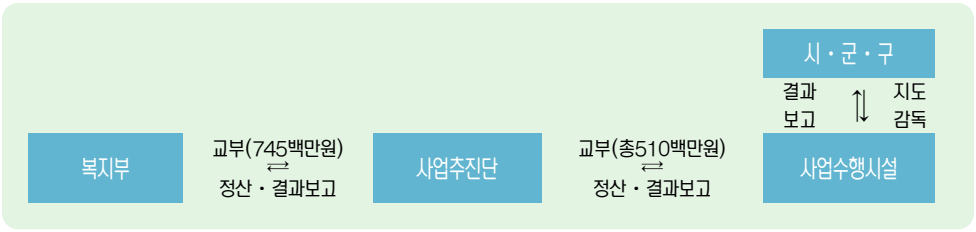

사업수행시설 지원 내역

○ 사회복지시설 특성화 · 다기능화 사업 추진 지원 : 510백만원

– (특성화) 2개 시 · 군 · 구 당 75백만원씩 지원 : 150백만원

• (사업내역) 특화된 대상의 총량 증가, 프로그램 개수 증가에 따른 추가 사업비와 시설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

– (다기능화) 6개 시 · 군 · 구 당 60백만원씩 지원 : 360백만원

• (사업내역)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 이외 사업이 추가됨에 따른 대상 및 프로그램 수 증가에 따른 사업비 지원

(2) (사업수행시설) 사업비 관리 기본 원칙 및 집행

사업비 관리 기본 원칙

○ 구분 경리

– 사업수행시설은 기관의 예산과 구분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 구성

– 동 사업과 관련한 통장, 현금출납부, 증빙서류를 별도로 관리

○ 문서간 상호 일치

– 통장의 입출금 내역, 표준현금출납부 및 증빙서류 상 내용은 반드시 상호 일치하여야 함

○ 관련 법규의 준수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근로기준법, 세법 및 관련 법규,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비의 집행

○ 법인카드(클린카드) 및 계좌이체를 통한 집행

○ 사업 목적 외 사용 및 부정 사용 금지

– 사업 목적 외 시설 개·보수 등의 용도로 사업비 집행 불가

* 사업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될 경우 환수 등 조치

– 사업비 집행계획서에 계획되지 않은 사업비는 집행 불가

*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비를 변경 집행할 경우, 사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집행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집행 가능

(3) 사업비 정산

정산의 범위

○ 사업수행시설 및 시·군·구청은 시범 운영에 대해 사업 중간 평가 시 실시하는 중간 정산과 최종보고서 제출 시 실시하는 최종 정산으로 구분

중간 정산 절차

- 사업수행시설은 사업추진단으로 중간 보고서 제출 시 사업비 집행 중간 실적을 보고
- 사업추진단은 사업비 집행이 적정한 지 점검 후, 부적정한 경우 환수 등 조치 가능

최종 정산 절차

- 사업수행시설은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단으로 최종 보고서를 제출 시 사업비 집행실적을 보고하고, 사업추진단이 지정한 계좌로 사업비 잔액과 이자를 반납(11월 중)

  – 제출 서류

  ①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서 1부

  ② 사업비 집행관련 증빙서류 사본

  * 원인행위 관련 공문, 구입 및 지출결의서, 영수증(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

  ③ 사업비 통장 사본

- 사업추진단은 사업비 집행실적보고서 접수 후 1개월 내에 확정된 정산 결과를 사업수행시설에 통보(12월 중)
- 사업수행시설은 사업추진단의 정산 결과 통보 후 7일 이내에 환수액 등 차액을 사업추진단으로 반납
- 사업추진단은 8개 지역의 사업비 최종 정산 결과를 복지부 및 관할 시·군·구청에 보고하고, 집행잔액을 반납

정산 시 주의사항

- 사업비의 별도 계정 및 별도 통장관리 여부

- 항목별 집행 내역의 적정성

  - 사업추진단은 승인한 사업수행시설의 계획서에 계획된 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 동일한 항목에 대한 이중 지급 여부 확인

    * 관리자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이 해당 사업 수행시설 운영 경비와 관리비에 이중으로 편성·집행되었을 경우 환수 조치

  - 사업비에서 기자재 및 장비 구입 여부 등 집행 적정성 확인

    * 간접비를 활용하거나 임차료가 구입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자재 및 장비구입 불가하며,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 등 조치

- 정산 관련 서류 관리의 적정성

  - 집행 내역별 정산 관련 서류 구비 여부 확인 후 통장, 회계장부, 지출원인행위, 지출결의서, 영수증(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의 집행 일자, 금액 등의 상호 일치 여부 확인

    * 관련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거나,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불일치 할 경우 환수 등 조치

부 록

[서식1] 특성화·다기능화 사업지역 신청서

〈시·군·구〉 작성용

특성화·다기능화 사업지역 신청서				
시·군·구명				
신청유형	□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제5유형 □제6유형 □제7유형			
수행시설수	개소			
예 산 (단위:천원)	총사업비 : 천원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담 당 자	성 명		소 속	
	직 급		전 화	
	e-mail		fax	
우리 시·군·구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특성화·다기능화 사업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가족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1)
) · ·

부록

사 업 계 획 서

Ⅰ. 추진배경

1. 시범운영의 필요성
2. 시범운영의 목적과 목표
3. 시범운영 추진전략

Ⅱ. 사업개요

1. 사업신청지역 현황 및 특성('09.12월말 기준)

가. 복지대상자 현황

※ 특성화 또는 다기능화 사업과 관련된 복지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작성

(예.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대상을 노인까지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유형을 신청한 경우, 등록장애인 및 노인에 대한 인구 현황 작성)

나. 복지인프라 현황

□ 사회복지생활시설(단위 : 개소)

계	노인	장애인	아동	한부모	정신요양	부랑인	기타

□사회복지이용시설(단위 : 개소)

계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기타 복지관련 기관(단위 : 개소)

계	지역자활센터	시니어클럽	자원봉사센터			

※ 특성화 또는 다기능화 사업과 관련된 복지인프라현황에 대해서 작성

(예.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대상을 노인까지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유형을 신청한 경우, 장애인복지관 및 노인관련 복지시설 현황 작성)

※ 특성화 또는 다기능화 사업수행시설은 가장 최근에 받은 시설평가 등급을 반드시 명기

다. 지역특성

※ 임대아파트 밀집지역, 특정 대상(노인, 장애인 등) 빈도 등 지역상황 기술. 또는 복지시설 및 인프라 상황 기술

2. 추진체계

가. 시범운영 관련 인력배치 및 업무분장

과·담당명		업무내용	현 원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과	1 ○○담당								
	2 ○○담당								
	3 ○○담당								
	4 ○○담당								
○○과	1 ○○담당								
	2 ○○담당								
	3 ○○담당								
	4 ○○담당								

※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 이외에 시범운영과 관련된 담당부서의 인력배치 및 업무분장에 대해 작성

나. 사업 수행체계

※ 시·도, 시·군·구, 사업수행시설 및 관련된 기관의 역할과 책임, 업무의 흐름도 등을 약술

3. 주요사업

※ 특성화 또는 다기능화 사업대상, 사업내용, 추진방안 등 기재

4. 추진일정

○ 2010년도

구 분	월별 추진일정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진진도 (%)													

[서식2] 특성화·다기능화 사업신청서

〈사업신청기관〉 작성용

특성화·다기능화 사업신청서

◈ 기 관 개 요

기 관 명		설 립 일	
대 표 자		직 원 수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가 입 보 험	□ 고용 □ 산재 □ 의료 □ 연금
전화번호/FAX		사 업 책 임 자	(성명) (직위) (연락처) (E-mail)

◈ 신 청 내 용

사 업 유 형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사 업 명						
사업운영인력수	※ 신규인력 채용계획이 있을 경우 명기					
사 업 규 모 (연 간 예 산 액)	총예산		국고		자체지원	

위와 같이 2010년도 특성화·다기능화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 표 (인 또는 서명)

시·군·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행인력 편성현황 1부.
3. 사업비 산출내역 1부.

첨부 1

사 업 실 행 계 획 서

Ⅰ. 신청기관 사업개요

1. 연혁

가. 신청기관 설립 배경 및 사업내용

* 기관의 설립배경과 설립목적, 설립근거,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기술

2. 조직 및 인력 현황

가. 기관 전체의 조직 및 인력 현황

나. 공모관련 사업수행 부서의 인력 및 조직 현황

* 동 사업을 위해 신규인력 채용 계획이 있을 경우, 신규인력을 포함하여 기술

3. 공모 분야와 관련된 그간의 사업 추진 성과

* 사업 수행 능력을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므로 공모분야와 관련된 사업내용 등을 개조식으로 알아보기 쉽게 기술(최근 3년간의 내용을 중점 기술, 실적지표 중심으로)

* 응모기관이 본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유사사업 경험, 지역주민 욕구, 지자체장·지방의회의 관심도 등)도 기술

Ⅱ. 2010년도 사업계획

특성화 또는 다기능화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기술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표

가. 사업의 필요성

나. 사업의 목표

*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기술. 세부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세부사업별로 모두 기술

2. 사업 내용 및 방법

가.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자 관리 등을 기술

나. 사업 수행체계

* 사업추진기관 및 관련된 기관의 역할과 책임, 업무의 흐름도 등을 기술

다. 사업 내용 및 범위

* 세부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세부사업별로 모두 구체적으로 기술

라. 사업추진 방법

* 타 기관과의 협조방안(연계망 구축방안), 운영위원회 구성, 회의개최 등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기술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사업방법, 추진전략 등 기술

마. 사업의 성과관리 방안

* 사업목적의 달성여부를 확인하는 세부사업별 방안에 대해 기술

바. 기대효과

*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사. 활용방안

* 향후 특성화 또는 다기능화 사업 확대계획, 예상되는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아.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극복방안

*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처 방안에 대해 기술

3. 사업추진 일정표

○ 2010년도

구 분	월별 추진일정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진진도 (%)													

첨부 2

사업 수행 인력 편성현황

1. 사업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 핸드폰 :

학력	기 간	학 교	전공	학위	비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위	비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2. 사업수행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 출신학교	학 위	비 고

3. 사업분담표

분 담 내 용	사업책임자			사업수행자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첨부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번 호	세부 사업별	필요사유	수량, 단가, 횟수 등 구체적인 세부 산출내역	금 액 (천원)	비 율 (%)
사 업 비 총 액					
1					
2					
3					
4					
5					
6					
7					
8					
9					
10					
·					
·					

주1) 공모관련 지원예산의 인건비 지원은 1명 이내 편성
주2) 사업비 사용내역은 심사시 주요 평가항목의 하나이므로 적정 사업비 산출에 유의
주3) 항목별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서식3] 특성화·다기능화 사업지역 선정 관련 의견서

〈시·도〉 작성용

특성화·다기능화 사업 지역 선정 관련 의견서

시·도

신청 시·군·구명	시·도 의견

<작성요령>

○ 각 시·도에서 관할지역 내 시범사업 신청 시·군·구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을 기재

[서식4] 특성화·다기능화 사업신청기관 심의 관련 의견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작성용

특성화·다기능화 사업 신청기관 심의 관련 의견서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신청기관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의견

<작성요령>

○ 각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관할지역 내 신청기관이 시범운영을 실시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여 의견을 기재

사업비 집행계획서

(단위 : 천원)

구 분		금액	산출근거	예산금액
계				
사업비	소 계			
	인건비	15,000	급여 1,500,000* 9월 = 13,500,000원	13,500
			4대보험료 = 1,500,000원	1,500
	교육비	1,150	강사비 100,000*2시간*4회	800
			현수막 50,000*2개	100
			교재비 5,000*50권	250
	재료비	…	…	…
			…	
	관리비	…	…	…
			…	
	교육비	…	…	…
			…	
	홍보비	…	…	…
			…	
관리 운영비	소 계			
	여비	…	…	…
			…	
	일반수용비	…	…	…
			…	
	업무추진비	…	…	…
			…	

* 위 양식은 (예시)이며, 각 사업수행시설은 사업 목적 및 사업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구체적 산출근거에 의거 사업비 집행계획서를 작성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 신청서

사업명	
지역	
신청기관명	

1. 사업 변경 개요

○

-

2. 사업 변경사유

○

-

※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을 간략히 작성

3. 예산 변경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당초 예산	변경(증감)	변경 후 예산 (예산 현액)	변경 후 예산 향후 집행액
총계					
사업비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교육비				
	소 계				
관리 운영비	여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소 계				

4. 산출근거

※ 사업비 변경의 구체적 산출 근거를 작성

[서식7] 사업비 지원 신청서

「특성화・다기능화」사업비 지원 신청서

◈ 기 관 개 요

기 관 명		대표자명	
		전 화	
사업담당자		팩 스	
		이 메 일	

◈ 지원 신청

사 업 명			
지 원 구 분	분기 청구(회차 : 회)		
사 업 규 모 (연간예산액)	총사업비	금번 신청액	지원 누계액
은행/계좌번호		예금주	

위와 같이 2010년도 특성화・다기능화 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 표 (인 또는 서명)

시・군・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통장사본 1부
2. 동 사업 전용 결제카드 사본 1부